

진실 · 화해위원회 이후: 아르헨티나와 페루의 배 · 보상과 추모 정책*

박 구 병
단독/아주대학교

Park, Koo-Byoung (2010), After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TRC): The Policy of Reparations and Commemoration in Argentina and Peru.

Abstract This article tries to examine what followed after the official activities of the Argentine CONADEP(Comisión Nacional sobre la Desaparición de Personas) and the Peruvian TRC. The Argentine example along with its official report titled *Nunca Más* was regarded as a model case that the subsequent similar commissions would have to consult. After a long pause of forgetting and indifference, the Argentine civilian governments succeeded in resuming the processes of transitional justice, caring for the victims' rights to truth and justice, providing them with reparations, and even putting the military perpetrators on trial. In contrast, the Peruvian case, in spite of the comprehensive recommendations of the TRC, exemplified a complex and unfavorable situation in which the longstanding tripartite strife hindered the successive governments from propelling effective policies of reparations and reconciliation.

In both countries, reparations entailed acts of restoring what had been lost and giving something, whether symbolic or material, to victims equivalent to a loss to compensate harm. Neither truth nor justice, including economic reparations, was able to repair the loss of victims, but such measures provided recognition for victims and contributed to better individual and collective processes of dealing with the tragic past.

The policy of reconciliation included not only reparations but also a continuing dynamic confrontation with the past, in other words, an exercise of memorialization through institutional and state-sponsored commemoration. In Argentina and Peru, these programs of reconciliation at the level of the state worked in the form of building monuments for victims and opening security

* 본 논문은 2009년 아주대학교 우수연구그룹 육성지원사업에 의해 수행된 연구임.

archives, though it is too early to judge whether such development of levels of reconciliation could be identified as solid democratization and culture of peace and human rights.

Key words Argentina, Peru, Reparations, Reconciliation, Commemoration

아르헨티나, 페루, 배·보상, 화해, 추모

I. 서론

1970년대 군부의 압제를 경험한 라틴아메리카의 여러 국가는 대체로 1980년대 초부터 민주화 이행기에 들어섰다. 이 때 군부 독재 체제의 여러 인권침해 사건을 둘러싸고 진실, 정의, 그리고 화해를 모색하려는 과거사청산 또는 정리가 민주화 이행기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으며 이런 시도는 진실·화해위원회의 구성과 인권침해 가해자들의 사법 처리로 이어졌다. 공적 기관으로서 진실·화해위원회가 일정 기간 동안 과거의 인권침해 사건들을 조사한 대표적 사례로는 아르헨티나, 칠레, 과테말라, 페루, 엘살바도르 등을 들 수 있다. 격렬한 논란에 휩싸이기도 한 라틴아메리카의 진실·화해위원회는 비극적인 과거사를 적절하게 다룰 수 있는 조치들을 모색하는 데 필요한 토대를 제공했다.

그 가운데 아르헨티나의 실종자진상규명국가위원회(Comisión Nacional sobre la Desaparición de Personas: CONADEP)는 사실상 제2차 세계대전 뒤 설치된 최초의 공식적 조사위원회로서 향후 유사한 위원회의 모델이 되었다. 아울러 위원회의 최종보고서 『눈까마스 *Nunca Más*』는 군부가 자행한 국가 폭력에 대한 종합적인 고발장으로서 진실규명 작업의 대명사가 되었다. 요컨대 아르헨티나는 라틴아메리카의 민주화 이행 과정을 선도했을 뿐만 아니라 가장 폭넓게 공식적인 ‘진실과 정의’ 정책을 추진한 사례였다.

페루에서는 알베르토 후지모리(Alberto Fujimori) 정권(1990-2000)이 부패와 권력남용에 대한 거센 저항에 직면해 와해된 뒤 예기치 않은 민주화 이행

이 전개되었고 그 과정에서 2001년 6월 4일 임시정부는 진실위원회를 조직했다. 같은 해 9월 4일 톨레도(Alejandro Toledo) 정부는 이를 진실·화해위원회(Comisión de la Verdad y Reconciliación: CVR)로 개칭했다. 이 위원회는 급진파 게릴라 세력 ‘빛나는 길’(Sendero Luminoso: PCP-SL)의 반란이 시작된 1980년 5월부터 후지모리가 페루를 탈출해 일본으로 망명한 2000년 11월 까지 정부군(軍)과 게릴라 세력의 충돌 과정에서 빚어진 대량학살에 대한 진실과 책임 규명을 목적으로 조사 활동을 전개했다.

과거사청산 또는 정리는 흔히 진실규명, 피해자의 명예회복, 가해자의 법적 책임 규명과 처벌을 통한 ‘정의’의 실현,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화해와 통합, 그리고 과거사의 비극을 후속세대에게 교육하는 일 등을 포함한다. 그렇지만 원칙적인 과거사정리 해법이 정연하게 실현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가해자 처벌로 상징되는 ‘정의’의 실현을 우선시하는 사례뿐만 아니라 그것이 야기할지 모를 대립과 갈등을 고려해 ‘정의’를 관철시키기보다 예컨대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¹⁾을 바탕으로 우회적인 화해 정책을 구사하는 경우를 비롯해 해당 사회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양한 양태가 펼쳐진다.

대개 사법적 정의의 실현보다는 위원회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는 방식이 선호되고 그 뒤 배·보상을 통해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는 수순을 따른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사법 처리는 가해자의 처벌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기보다 책임 규명과 배·보상을 위한 선결조건으로 여겨지곤 한다. 더욱이 바람직한 과거사정리는 진상규명의 단계를 넘어 비극적인 과거사가 남긴 상흔의 치유, 진지한 화해와 ‘윤리적 기억’을 지향해야 한다(Lerner Febres 2009, 264-265). 이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차원을 넘어 해당 사회의 구성원, 나아가 후속세대 전체의 문제, 말하자면 사회적·집단적 노력과 참여의 문제

1) 배·보상은 여러 가지 형태의 복구와 회복을 의미하는 용어로서 원상회복, 사회 복귀, 사죄와 재발 금지 보장 등을 포함한다(헤이너 2008, 298). 굳이 두 가지 용어를 구분한다면, 배상은 불법적인 행위의 피해에 대한 손실의 보전(補填)을, 보상은 반드시 불법적인 행위에 따른 피해가 아니더라도 발생한 모든 종류의 손실에 대한 보전을 의미한다.

일 수밖에 없다(Kaiser 2005, 125-126). 홀로코스트와 관련된 유대인들의 집단 기억이 예증하듯이 특정 사회의 과거 체험은 후속세대가 지니는 정의(正義)의 기준이나 문화적 정체성의 근간을 이루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외국의 과거사정리 사례를 다룬 기존 연구는 주로 정리 대상이 되는 과거사의 비극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춰 사실 관계의 파악에 주력함으로써 실제 공식적인 과거사 정책의 내용과 이를 둘러싼 사회적 반응과 논란에 관해 밝히는 바는 많지 않았다. 특히 국내의 연구는 대체로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이나 사법 처리 과정에 초점을 맞춰온 반면, 피해자의 명예회복이나 배·보상 문제에 관해선 관심이 덜 한 편이었다. 최근 들어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이루고 있지만 후속세대를 위한 기억의 역사화 문제 역시 그동안 제한적인 관심을 끌어왔을 뿐이다.

이 글에서는 진상규명 활동에 대한 검토를 넘어 국가 차원의 배·보상과 추모, 기념사업 등 일련의 화해 정책이 과거사정리 과정에서 어떤 중요성을 지니는지,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어떠했는지 고찰함으로써 기존의 과거사정리 연구의 폭을 확대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배·보상 문제는 진지한 화해의 첫걸음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 특히 라틴아메리카의 아르헨티나와 페루에서 공식적인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 이후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추모와 화해 사업,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어떤 수준에서 전개되었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과거사정리를 언급할 때 설정할 수 있는 몇 가지 주요 과제, 즉 진상규명, 가해자 처벌, 피해자 배상과 보상, 그리고 화해와 기억의 역사화를 고르게 살펴보는 데 일조하고자 한다.

부끄러운 과거를 반성하고 기억하는 일은 이제 특정 사회의 수치가 아니라 오히려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교육적 효과를 지닐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수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군부독재로 대변되는 권위주의 전통과 취약한 민주주의, 경제 위기, 심각한 사회적 부정(不正)과 불공평, 강력한 대중적 저항 등 라틴아메리카가 경험한 다양한 사회적 문제점을 고려할 때 과거사정리를 통해 역사적 기억을 구축하는 과업은

라틴아메리카의 민주주의 강화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라틴아메리카 국가 가운데 아르헨티나와 페루를 선택한 까닭은 진실·화해위원회 이후 사법 처리를 비롯한 양국의 과거사정리 후속조치가 대조적인 양상을 보였기 때문이다. 진실·화해위원회가 설치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을 조사 대상을 기준으로 군부독재의 인권침해 유형과 내전 또는 무장 충돌 유형의 두 범주로 구분할 때 양국은 각 범주를 대표하는 사례이다. 아르헨티나의 실종자진상규명국가위원회는 사법 처리의 전례(前例)나 보완으로, 페루의 진실·화해위원회는 그것의 대체물로 기능했다는 점에서 대조적이다. 주로 국가폭력의 수준과 가해 책임을 규명해야 하는 아르헨티나의 비교적 명확한 과업에 비해, 페루의 경우는 정부군, 게릴라 세력, 산악지대의 원주민 간에 더욱 산발적으로 펼쳐진 ‘삼중충돌’ 탓에 책임 소재의 범위가 더 넓을 뿐만 아니라 배·보상이나 추모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어려운 복잡성을 드러냈다.

II. 아르헨티나와 페루의 진실·화해위원회와 배·보상 정책

진실, 정의, 기억, 화해를 지향하는 과거사정리는 위원회를 통한 공식 조사 활동, 재판, 사면, 배·보상, 추모와 기념 등의 절차와 내용을 지닌다. 예컨대 아르헨티나에서는 1980년대 초 민주화 이행이 시작되면서 실종자진상규명국가위원회가 설치되어 진상규명 활동을 펼친 뒤 결과보고서인 『눈까마스』를 발간했다. 과테말라와 엘살바도르에서는 1990년대 중반부터 정부와 게릴라 세력이 내전 종식을 위해 평화 협상을 벌이는 과정에서 진실·화해위원회가 등장했으며 페루에서는 2000년대 초 예기치 않은 민주화 이행을 맞아 위원회의 활동이 주목을 끌었다. 위상, 위임 범위, 조사 영역과 접근 방식의 상이성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의 위원회는 대체로 배·보상과 화해를 위한 출발점으로 인식되었다. 그 권고안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공식적인 배·보상과 추모 사업을 통해 국민적 화해를 모색하고 바람직한 기억의 역사화를 도모하는 것이었다.

1. 아르헨티나의 배·보상 정책

아르헨티나 정부는 국가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된 뒤 『눈까마스』의 권고안(1984년 9월)에 따라 인권침해 피해 당사자와 그 가족·친척에 대해 경제적 후원, 학자금, 연금, 고용 지원을 포함한 배상 정책을 실시하고자 했다. 최초의 사례로는 1986년 10월 30일 실종자 가족을 위한 연금법(법률 23,466호)과 1987년 7월 30일 부모가 실종된 미성년 자녀들을 위한 연금시행령(행정명령 1,228/87호)을 꼽을 수 있다. 과거의 국가폭력을 시정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했다는 점에서 흔히 ‘사법적 혁명’(Carrillo 2006, 506)으로 평가받는 1988년 미주인권재판소(Inter-American Court of Human Rights: IACHR)의 판결에 따라 아르헨티나에서는 몇 차례에 걸쳐 정치적 구금자와 실종자의 부모와 어린 자녀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법률이나 행정명령이 통과되었다. 그 중 1991년 12월 23일 공포된 ‘계엄령 기간 동안 행정부 지배에 의한 피해자들에게 수여된 혜택’(법률 24,043호)은 정치적 수감자를 비롯한 ‘추악한 전쟁’의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기준을 마련했다. 이 법의 2조는 “1983년 12월 10일 이전 행정부에 의해 수배된 자”나 “민간인 신분으로 군사 법원의 결정에 따라 자유가 박탈되거나 법에 의거해 처벌을 받은 자”를 피해자로 규정했다.

법률 23,466호에 따르면, 실종 피해자의 가족은 통상 퇴직 공무원이 수령하는 최소한의 액수에 상당(相當)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이들은 실종자들의 합법적인 배우자 또는 실종 시점 이전에 최소 5년 이상 동거한 자, 21세 이하의 자녀, 그리고 형제, 자매였다. 장애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종자의 자녀가 21세에 이르면 연금 혜택이 종료될 것이었지만 나중에 연금 수혜 연령은 25세 또는 대학 졸업 때까지로 연장되었다. 실종자의 부모와 형제, 자매 가운데 경제활동에 종사하기 어렵거나 연금, 퇴직수당, 면세 혜택을 받지 않는 장애인은 이 법률에 의거해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 혜택은 만료시한이 없었다. 이 범주에 속하는 실종 피해자의 가족은 금전적 배상뿐만 아니라 의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이와 관련된 업무는 사회·인권차관보실(Subsecretaría de Derechos

Humanos y Sociales)이 담당했다. 이는 국가위원회의 최종보고서 제출 직후인 1984년 9월 20일 내무부(Ministerio de Interior) 내에 신설된 조직이었다. 그러다가 내무부의 구조가 개편되면서 사회·인권차관보실은 국가인권감독실로 바뀌었고 1996년 내무부 구조 개편에 따라 다시 사회인권차관보실로 환원되었다. 이는 1999년에 법무·안보·인권부(Ministerio de Justicia, Seguridad y Derechos Humanos)로 이전되어 2002년부터 사회·인권차관실(Secretaría de Derechos Humanos y Sociales)로 격상되었고, 현재까지 동일한 명칭으로 존속되고 있다.

1991년 1월 행정명령 70/91호에 따르면, 구금 피해자에 대해선 구금 일수당 공무원 급료 체계의 최상위 범주가 수령하는 월 급여액의 1/30(미화 \$27)씩 기본액수로 배상하도록 했다. 불법 구금 기간에 사망했을 경우는 상기 기본액수 외에 5년 치 급료(미화 \$49,275)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추가로 지급받게 되었다. 구금 중 중상을 입었을 경우, 피해자는 기본액수 외에 30% 인화된 5년 치 급료(미화 \$34,492, 사망자의 70%에 해당)를 배상액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다. 나아가 법률 24,043호(1991.11.27)에서는 일일 기본액수가 미화 \$74로 재조정되었다(Guembe 2006, 31-33). 이 배상금의 수령자는 법률 공포 뒤 180일 내에 신청해야 하고 다른 배상액의 수령 권리를 철회해야만 했다. 일부의 경우 금전적 보상은 특별 상점이나 주택 이용권 또는 의무 면제와 같이 다른 보완적 조치를 통해 대체될 수 있었다. 특히 실종자의 가족들은 군 복무의 의무를 면제받기도 했다(Roht-Arriaza 1995, 290).

하지만 아르헨티나에서는 무엇보다 배상 범위나 금액뿐만 아니라 배상금의 수령 자체가 타당한가를 둘러싸고 피해자 단체 간에 뜨거운 논란이 벌어졌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1979년 8월 발족한 오일광장어머니회(Asociación Madres de Plaza de Mayo) 회원들은 '자녀들의 피 값'이 실종된 자녀들의 귀환을 대체할 수 없다는 이유로 모든 형태의 배·보상금 수혜를 거부해왔다. 진상 규명을 통해 상흔이 치유되기 전까지 정부 차원의 물질적 배·보상에 대해 거부할 것이라는 방침과 지도부의 정치적 견해에 불만을 품은 일부 회원들은

1986년 1월 별도로 오월광장어머니회-설립자노선(Madres de Plaza de Mayo-Línea Fundadora)을 구성했고 1991년 제정된 정부의 배·보상법은 두 어머니회 사이를 더욱 멀어지게 만들었다. 어머니회는 배상금을 ‘얼룩진 돈’으로 받아들여 그것의 수령을 돈과 실종자들의 생명을 맞바꾸는 ‘매매’ 행위로 인식했고 (Guembe 2006, 47), 설립자 노선이나 다른 인권 단체들이 정의의 요구를 단념하거나 배상을 대량학살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책임 시인으로 받아들여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품었다. 반면 설립자 노선은 정부 차원의 배·보상금이 구금이나 실종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상징적으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 지원의 수혜를 부정적으로만 이해하진 않았다(박구병 2006, 83).

시간이 지나면서 피해자 단체들은 차츰 진실과 정의의 추구에 인권침해 피해자들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라는 요구를 덧붙이는 일이 가능할뿐더러 배·보상 자체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는 점에 공감하게 되었다. 물론 피해자들이 실제로 혜택을 받으려면 앞서 언급한 대로 피해자와 가족, 친지들이 정부의 배·보상금 수령을 원하지 않는 것을 포함해 몇 가지 문제점이 해결되어야 했다. 또 정부의 사면 조치를 둘러싸고 불만이 커지면서 희생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은 일종의 균형추 역할을 할 순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가해자 기소의 대체물이나 인권침해 범죄자들이 누구인지 밝히고 그들을 처벌해야 할 국가의 임무를 덜어주는 것으로 인식되어선 안 된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았다. 더욱이 2001년 말 대대적인 경제 위기가 도래함에 따라 아르헨티나 정부가 약속한 배상금의 지급은 사실상 중단되고 말았다.

아르헨티나에선 진실규명과 사법적 정의의 추구가 우선시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례에서 나타나는 ‘화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등장한 경우는 드물었다. 달리 말해 아르헨티나에선 진실규명과 가해자 처벌, 피해자에 대한 보상 없이 정의나 화해는 있을 수 없다는 견해가 뚜렷한 편이었다. 실상 ‘화해’라는 명칭을 지닌 공공기관이나 민간단체를 찾아보기 어렵다. 결국 오월광장어머니회를 비롯한 피해자 단체가 실종자 문제의 진상규명을 줄기차게 요구하면서 정치적 압력을 행사했고 이를 통해 국제적인 지명도를 높였다는

사실은 시간이 흐른 뒤에라도 정치 세력의 교체를 계기로 과거사정리 문제가 재론되는 데, 특히 2003년 네스토르 키르츠네르(Néstor Kirchner) 정부의 출범 이래 가해자에 대한 기소 정책이 강화되고 형사 재판이 재개되는 데 밑거름이 되었다(Grandin 2005, 64).

2. 페루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과 배·보상 정책

2년에 걸쳐 진행된 페루 진실·화해위원회의 주요 조사 대상은 사실상의 내전 기간(1980-1993) 동안 아야꾸초(Ayacucho)의 산악지대에서 발생한 정부군, ‘빛나는 길,’ 농민자위대(rondas campesinas) 간의 격렬한 ‘삼중충돌’이었다. 게다가 위원회는 내전기의 폭력행위뿐만 아니라 1992년 게릴라 운동을 패퇴시킨 뒤 2000년까지 점차 악화된 후지모리 대통령의 권력 남용에 대해서도 조사할 임무를 부여받았다(Burt 2007, 16; 하이트 2008, 274). 위원회는 2002년 4월 아야꾸초의 와망가(Huamanga)에서 첫 번째 공청회를 개최했다(Méndez & Mariezcurrena 2003, 248). 이곳은 오랫동안 소외와 배제를 겪어온 가장 가난한 원주민들의 터전이자 게릴라 세력의 ‘요람’²⁾이었으며 내전 기간 동안 전체 사망자와 실종자의 40%를 낳은 대표적인 피해 지역이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총 17,000건의 증언과 14차례의 청문회를 토대로 2003년 8월 28일 9권짜리 최종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년 동안 페루에서는 69,280명이 사망하고 그 가운데 79%가 농촌 지역에서 희생되었으며 최대 가해자 집단은 ‘빛나는 길’이었다.³⁾ 게릴라 세력이 최대 가해

2) 1992년 9월 후지모리 정권의 소탕 작전으로 리마의 ‘안가’에서 체포당한 뒤 종신형을 선고받은 ‘빛나는 길’의 창설자 아비마엘 구스만(Abimael Guzmán)은 진실·화해위원회와 가진 면담을 통해 아야꾸초를 게릴라 조직의 탄생지이자 ‘요람’(la cuna)으로 지칭한 바 있다(CVR 2003, I, 79; Theidon 2004, 26).

3) 사망과 실종 건수의 54%는 ‘빛나는 길’의 책임으로, 37%는 정부군의 책임으로 인정되었다(Theidon 2004, 19; Burt 2007, 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2008, 166). ‘빛나는 길’의 저항은 1980년대 말 페루의 24개 주 가운데 22개 주에서 활발히 전개될 정도로 정점에 이르렀지만 이데올로기적 교조주의, 선거 참여 전술과 ‘민주적 좌파’에 대한 공세, 군부의 강경 진압 등으로 점차 그 세력이 약화되었다(Haworth 1993, 53-55; Stern 1998, 471-472; Burt 2007, 3, 6-7).

사실 진실·화해위원회가 최대 가해자로 지목한 것은 군부가 아니라 ‘빛나는 길’이었기 때문에 아르헨티나와 칠레에 비해 군부의 반발은 그리 크지 않았지만 정치권은 군부를 자극하지 않으려고 했다.⁶⁾ 그 까닭은 어떤 정치 세력도 확고한 기반을 지니지 않았기 때문이거나 한편으로는 일본계로 정치적 기반 없이 대통령에 당선된 후지모리가 집권 기간에 군부와 정보부에 의존하면서 군부의 권력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페루의 과거사정리가 지닌 마지막 특징은 정치적 폭력 사태가 낳은 사상(死傷)이 뚜렷한 인종적·계급적 편중성을 드러냈다는 점과 관련이 깊다. 아르헨티나와 칠레의 경우와는 달리 페루의 정치적 폭력은 뿌리 깊은 인종차별과 지역 갈등이 사실상의 내전 국면 속에서 상승되어 표출된 것이었다.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사망자와 실종자들의 75%는 에스파냐어를 사용하지 않는 가난한 원주민들이었고 그 중 40%가 아야꾸초 출신이었다. 이런 문제는 진실·화해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아야꾸초 주민들의 불만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위원 12명 가운데 단 한 명만 켄추아어에 능통하다는 사실은 지속적인 원주민 차별과 지역 배제의 재확인으로 인식되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특정 폭력 사건뿐만 아니라 ‘원주민과 안데스 지역의 총체적인 인권침해’에 대해 조사하도록 요청받았지만 조사 과정에서는 이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지 않았다(헤이너 2008, 443).

더욱이 ‘빛나는 길’의 활동이 만만찮은 충격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페루인들은 대체로 이를 아야꾸초를 무대로 한 지역적 사건으로 받아들였다. 리마를 비롯한 타 지역, 특히 해안지대 주민들은 20년 동안의 정치적 폭력 사태를 자신과 직접적 연관이 없는 안데스 원주민들의 문제로 치부했다. 안데스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경시와 무관심, 그리고 중앙 정치무대와 지방 사이의 간극은 심각한 폭력 사태가 극단적으로 흐르게 된 까닭인 동시에 국민적 화

6) 예컨대 2006년 대통령 선거에서 중도좌파 정당 아메리카혁명민중동맹(APRA, 실질적으로는 1950년대부터 이미 보수화의 길을 걸었다) 후보로 나섰던 현직 대통령 알란 가르시아(Alan García)는 군부의 대량 학살 책임을 지적한 진실·화해위원회와의 ‘기억 전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해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었다(Theidon 2006, 455-456).

그러므로 페루의 과거사정리는 정의의 요구, 배상, 제도 개혁, 기억 프로그램의 마련 등으로 해결되기는 어려운 성질의 것이었다. 후속조치에 원주민에 대한 인식의 근본적인 전환이나 획기적인 지역 간 균형 발전 등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정부나 제도권 정치에 대한 원주민 피해자들의 불신이 가속될 가능성이 컸다. 따라서 진실·화해위원회는 국민적 화해를 위해 다(多)종족, 다문화, 다언어 정책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도록 권고했다(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2008, 143, 204).

또한 진실·화해위원회는 1980년부터 2000년까지 자행된 폭력을 전체주의 이데올로기에서 비롯된 테러와 권력 획득 욕구의 소산으로 규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권고안에는 민주적 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 사법부 독립성과 인권 존중을 위한 개혁안이 포함되었고 정치, 사회, 개인 영역 등 세 가지 분야의 화해 원칙이 적시되었다. 페루 정부가 이 권고안을 바탕으로 2005년 4월 마련한 포괄적 배상 계획(Plan Integral de Reparaciones: PIR)은 정치적 안정의 회복과 지속적인 평화를 목표로 삼았다(Guillerot 2006, 34). 이 방안에 따르면 희생자와 수혜자는 광범위하게 규정되었고 배상에는 공식적인 유감 표명이나 인정 행위, 기념 같은 상징적 배·보상, 보건과 교육, 시민권 회복 같은 형태의 배·보상, 그리고 개별적인 또는 공동체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제적 배·보상이 포함되었다(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2008, 150-154).

인류학자들이 수행한 대면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가장 빈곤하고 소외된 지역에 거주하는 원주민 피해자들은 대부분 재판을 통한 가해자 처벌, 즉 ‘응보(應報)적 정의’ 보다는 배상을 더 현실적인 ‘정의’의 회복으로 선호했다(Laplante & Theidon 2007, 240, 242-243). 사법 처리를 화해나 관계 회복과 대립되는 것으로 보는 경향(Cole 2007, 8), 그리고 실제 사법 처리의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감안할 때, 배·보상은 화해의 방식일 뿐만 아니라 정의 실현의 유일한 방책으로 인식되기도 했다. 하지만 배상 권고안이나 포괄적 배상

〈표 1〉 아르헨티나와 페루의 배상 정책에 대한 간략 비교(Segovia 2006, 661, 664)

| 국 가 | 국내총생산 대비 세금부담률 | 배상에 대한 정부의 태도 | 재원 확보 계획 |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사항 |
|-------|----------------------|------------------|---|---|
| 아르헨티나 | 12.5% (1995-1999) | 우호적 | 국가기금(공채정리기 금 포함)으로 조성 | 국가의 배상 계획 주 도를 권고, 실제 공 채를 통한 자금 조달 |
| 페루 | 11.9% (2002) | 관심 미약 | 국가기금으로 조성, 외국기금으로 보충. 예컨대 외채와 배상 금의 교환을 한 가지 방안으로 제시. | 포괄적 배상 계획 제 안. 정부는 피해 지 역에서 평화와 개발 계획(사회적 프로젝 트나 사회기반시설 마련 계획)의 실행 발표 |

계획의 실행은 매우 더뎠다. 이미 피해자 단체와 인권관련 비정부기구들은 진실·화해위원회의 최종보고서에 대해 툰레도 대통령이 신속하게 부응하지 못했으며 배·보상을 회피한 채 포괄적인 사회 발전 프로그램만을 약속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실상 페루 같이 빈곤이 만연한 지역에서는 정부의 예산 압박이 심하기 때문에 광범위한 배·보상 프로그램의 실행 가능성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정부의 주무부서인 경제재정부는 배·보상에 대해 미온적이었고 대외채무 교환의 형태로 배·보상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자는 국제 사회의 협력과 원조 제의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대신 정부는 정치적 배경이 의심스럽고 심지어 '불법적인 사회 집단'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배상 계획보다 지역공동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프로그램의 지원에 활용 가능한 기금을 집중하는 편이었다(Segovia 2006, 672).

III. 희생자에 대한 추모와 기념 정책

기념사업을 통한 화해 정책으로는 정부 차원의 유감 표명, 유해 발굴과 이장(移葬) 행사, 거리나 학교 명칭에 희생자의 이름을 붙이는 특별한 명명식,⁷⁾

7) 1997년 10월 2일 심의위원회의 승인과 1998년 2월 11일 법률 통과를 거쳐 설립된

‘기억의 날’ 제정과 준수, 박물관 또는 추모기념관 건립, 미술품이나 드라마, 영화, 책 제작 등이 포함되었다. 아르헨티나에서 한 가지 특기할 사항은 기념 사업의 경우 부에노스아이레스 시를 중심으로 이뤄졌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기념 공원(Parque de la Memoria) 설립 조례(Ley 46/98, 1998년 7월 21일), 전(前) 비밀수용소 해군기술학교(ESMA)⁸⁾ 터의 ‘기억 박물관’ (Museo de la Memoria) 전환 프로젝트 관련 조례(Ley 392/00, 2000년 6월 1일), 그리고 ‘기억의 공간 협회’ (Instituto Espacio para la Memoria) 창립에 관한 조례 (Ley 961, 2002년 12월 5일)를 꼽을 수 있다.

해군기술학교의 건물들을 부수고 새로운 평화 공원을 세우려고 한 카를로스 메넴 대통령의 계획은 1990년대 말 대중의 강력한 항의에 직면해 무산되었고 결국 2003년 12월 아르헨티나 정부는 이 터의 원형을 보존하면서 국립 기억자료보관소(Archivo Nacional de la Memoria: ANM)를 설치함으로써 군부의 압제를 상징하는 탄압의 기록보관소로 기능하게 했다. 2004년 3월 24일 ‘기억의 날’을 맞아 연방 정부와 부에노스아이레스 시 정부는 이곳에 ‘기억과 인권 보호·증진을 위한 공간’ (Espacio para la Memoria y para la Promoción y Defensa de los Derechos Humanos)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또 다른 장소에 추모 공원과 기념물을 조성하는 사업이 부에노스아이레스 시 차원에서 추진되었다. 예비 승인과 열띤 청문회를 거쳐 공원 조성에 관한 조례(46/98호)가 1998년 7월 21일 통과되었다. 이 조례의 통과로 이미 구성된 국가폭력 희생자를 위한 기념비 추진위원회(Comisión pro Monumento a las Víctimas del Terrorismo de Estado)⁹⁾의 활동이 탄력을 얻었다. 추진위원회는

로돌포 왈쉬(Rodolfo Walsh) 중등학교의 사례를 들 수 있다(Instituto Espacio para la Memoria 2007, 106).

- 8) 1976년 3월 24일 벌어진 군부쿠데타의 주역 가운데 하나인 에밀리오 마세라 제독이 부에노스아이레스 서북쪽에 설립한 해군기술학교는 17헥타르의 부지에 총 37개의 건물로 이루어졌다. 이 해군기술학교는 340곳에 이르는 비밀수용소 가운데 가장 악명 높은 ‘기억의 터’ (sitios de memoria)로 알려졌다. 생환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곳에만 적어도 5000여 명이 수용되었다.
- 9) 이 위원회는 시 정부의 관리뿐 아니라 여러 정당 출신의 의원, 부에노스아이레스

2003년 부에노스아이레스 대학교에 인접한 라플라타 강 지역의 부지 약 14 헥타르를 추모 공원과 기념조형물 예정지로 선정했다. 이곳이 이른바 ‘추악한 비행’에 의한 사체 유기의 현상이었기 때문이다(Tandeciarz 2007, 153). 추진위원회는 입구 광장을 조성한 뒤 국제 공모전을 거쳐 2007년에 인권침해 희생자를 위한 추모 기념물을 설치했다. 44개국에서 출품된 665개의 작품 가운데 데니스 오펜하임의 ‘탈출의 기념비’ (Monumento al escape)와 윌리엄 터커의 ‘승리’ (Victoria)를 비롯해 12가지 추모 기념물을 배치하고 아울러 약 30,000개의 벽돌로 이루어진 대규모 벽면 4곳을 설치해 1969년부터 1983년까지 발생한 국가폭력의 희생자 8,700여 명의 이름을 새겨 넣었다.

아르헨티나에 비해 미진한 페루 내의 추모 사업은 여전히 배·보상은 물론 진상규명조차 끝나지 않은 사건들과 관련되어 있다. 몇 가지 상징적인 기념 활동으로는 1992년 12월 리마에서 ‘빛나는 길’에 의해 살해당한 페루 노동총동맹(CGTP)의 사무총장 페드로 율카 텍세(Pedro Huilca Tecse)의 흉상 제작, 1990년 육군 경비대에게 고문당한 뒤 사망한 농민 발데온 가르시아(Bernabé Baldeón García)의 이름을 도로, 광장, 학교에 명명하는 행사, 그리고 1991년 11월 리마의 바리오스 알토스(Barrios Altos)에서 육군 특수부대가 자행한 학살 사건의 추모비 건립 등을 들 수 있다(Defensoría del Pueblo 2008, 280).

또 인권침해 피해 진상 조사와 상징적 배·보상 조치로서 국가인권운동부즈맨은 아야꾸초 외에 아뿌리막(Apurímac), 후닌(Junín), 우까얄리(Ucayali), 와누코(Huánuco), 왕까벨리카(Huancavelica) 등지에서 강제 연행과 실종에 따른 부재자 확인을 공식적으로 승인하는 기념행사를 실시했다. 아울러 유서 깊은 민간기구인 가톨릭사회행동(Comisión Episcopal de Acción Social: CEAS)도 아야꾸초에 ‘기억의 집’ (Casas de la Memoria)과 추모비의 건립을 추진했다.

대학교의 대표자, 조례의 통과를 위해 노력한 열 곳의 인권 관련 비정부기구의 대표자들을 포함해 모두 27명으로 구성되었다(Tappatá de Valdez 2003, 100).

IV. 기억의 역사화: 기록보관소와 과거사재단의 설립

기억의 보존과 기록 보관 역시 과거사정리와 역사적 기억, 문화정체성의 회복과 관련해 매우 중요한 영역이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활동 이전부터 아르헨티나와 페루의 여러 인권 관련 비정부기구와 피해자 단체들은 실종 또는 살해되었다고 알려진 희생자들에 관한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비밀구금시설에서 생환한 이들의 증언과 그들이 확인한 정보를 보관하며 피해자들을 위한 법적·사회적·의료적 지원, 인권 교육과 연구 등의 업무를 꾸준히 수행했다. 위계적 정보 통제의 풍토 속에서 민간 차원의 기록보관소와 재단이 전개해온 이런 다양한 활동이 향후 국립기억자료보관소와 같은 공공 기관 설립의 모태가 되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Maymí-Sugrañes 1999, 230, 235).

1980년대 중반까지 아르헨티나의 기록 관리는 칠레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체험을 중심으로 한 ‘고통의 기록 보관’ 차원에 머물렀지만 민주화 이행기를 거치면서 그동안 베일에 싸여 있던 국가폭력의 기록이 점차 발굴·보존되어 국가의 공식적인 업무 영역으로 편입되었다(Alberti 2004, 99-100). 진실·화해위원회는 이런 토양 위에서 최종보고서를 통해 기존의 관제 역사를 부정(否定)할 수 있는 새로운 공식적 역사를 기록하는 역설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 이는 이제까지 권력층의 관점에서 기록하고 희생자의 경험을 소홀히 다루는 경향을 보여 온 기존의 역사 서술을 수정하는 일이었다(Lerner Febres 2009, 252).

아르헨티나의 법률사회연구소(Centro de Estudios Legales y Sociales: CELS)는 1979년 정치범의 가족들을 중심으로 창설된 독립 연구재단으로서 초창기에는 주로 피해자를 위한 법률 지원 사업을 펼쳤다. 그 뒤 법률 자문과 기록 보관뿐 아니라 교육 훈련, 개인과 집단의 정신 건강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¹⁰⁾ 1989년에 창설된 ‘열린 기억’(Memoria Abierta)은 ‘추악한 전쟁’ 동안 자행된 국가

10) 법률사회연구소는 미국의 포드 재단과 영국 외무성의 재정 지원을 받았고 1991년부터 국제연합(UN)의 ‘고문 희생자를 위한 자발적 기부금’으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했다. 또 실종자 자녀들의 특별 치료를 위해 1999년부터 2004년까지 국제사면위원

폭력에 관한 기억을 보존하려는 인권 관련 비정부기구들의 연합 조직으로서 연행·실종자 가족 모임과 오월광장어머니회-설립자노선을 비롯한 회원 단체들의 기록보관소의 운영과 보존을 체계화하고 나아가 집중화를 도모하며 차세대들을 위한 기억 교육 프로그램을 맡고 있다(Tappatá de Valdez 2004, 109-110).

한편 2002년 12월 민관협력형 공공 재단으로 설립된 ‘기억의 공간 협회’(Instituto Espacio para la Memoria)는 부에노스아이레스 시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되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민주주의 체제의 확립과 인권의 강화, 삶·자유·인간존엄성이라는 가치의 보급을 도모하기 위해 1970년대와 1980년대 초 국가폭력 체제로부터 법치국가(Estado de Derecho)의 복원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사건들의 기억과 역사를 보존하고 전수하는” 임무를 담당한다(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2010, 213).

실종자진상규명국가위원회의 임무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뒤 후속 업무를 넘겨받은 내무부 산하의 사회·인권차관보실은 국가위원회가 검토하지 못한 여러 사례들을 계속 조사했다.¹¹⁾ 결국 2003년 12월 16일 행정명령 1259/2003 호에 의거해 법무·안보·인권부 산하 인권과 사회적 권리 차관실 소속으로 국립기억자료보관소가 설치되었다. 옛 해군기술학교 부지에 설립된 이 조직은 실종자진상규명국가위원회의 기록을 관리할 뿐 아니라 피살, 실종, 수감의 피해자와 직계 가족, 그리고 생환자들이 국가 차원의 배상 과정에서 생산한 기록, 달리 말해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인권과 기본적 자유 침해와 관련된 증언과 문서를 입수, 분석, 분류, 복사, 디지털화, 보관”하고 『눈까마스』의 요청과 명령을 완수하고자 설득력 있는 교육 수단을 마련하며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주요 업무로 삼았다. 현재까지 문화관련 학술회의 개최, 기록 보관 과정의 개설, 도서관과 신문자료 보관소 운영, 증언의 디지털화

회로부터 보조금을 받기도 했다.

11) 사회·인권차관보실은 약 3천 건의 사례를 새로이 확인한 뒤 공식적인 실종자 수를 1만2천 명으로 상향조정했다. 하지만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나 다른 국제 인권단체들은 ‘추악한 전쟁’의 실종자 수를 1만5천 명에서 최대 3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기억 정책의 수립과 실행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2010, 205-206). 국가 기관의 신설로 문서의 다양한 재질과 형태, 문서 작성 기관의 해체나 이관에 따른 자료의 분산, 그리고 비정부기구들의 보관 능력 부족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자료들의 손실 가능성이 줄어들고 장기적인 기록 보존이 가능해졌다.

그밖에 국제기구의 자금과 노하우(know-how)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났다. 예컨대 유네스코(UNESCO)는 1992년 공동의 망각이라는 끔찍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서 자산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높이고 보존하며 지속적이고도 전면적으로 그것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세계의 기억 프로그램’을 발족하고 라틴아메리카의 문서기록 전통을 유지하는 데 특별한 관심을 보여 왔다. 이에 따라 탄압의 기록보관소를 보존하고 ‘세계의 기억’ 유산에 등재되도록 제안하는 작업이 칠레와 더불어 아르헨티나에서 추진된 바 있다(Alberti 2004, 100-101).

한편 페루에서는 가톨릭사회행동이 가장 오래된 비정부기구의 하나로서 일찍이 실종, 고문, 불법구금 피해자를 돕는 일을 전개해왔다. 폭력행위의 최대 피해지역인 아야꾸초에서 집중적으로 활동하면서 약 3,400여 건에 이르는 각종 인권침해 사례 관련 기록을 정리하고 사진 자료를 수집·복원하며 기념물의 설치를 비롯해 상징적 배·보상 문제에도 주력해 왔다. 가톨릭대학교의 ‘민주주의와 인권 연구소’(Instituto de Democracia y Derechos Humanos de la Pontificia Universidad Católica del Perú: IDEHPUCP)는 교육과 연구를 통해 페루 사회에 기억의 불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지방의 원주민들이 자신들의 역사를 재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또한 배·보상을 촉진하고 실종자를 찾아내거나 정신 건강의 치유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률안을 제안하는 등 압력단체로서의 역할에도 충실했다.

앞서 언급한 국가인권옴부즈맨은 2003년 8월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된 뒤 16,917건에 이르는 폭력행위 피해자들의 각종 증언 자료를 넘겨받아 배·보상, 인권의 회복, 법률과 제도의 개혁에 관한 진실·화해위원회의

〈표 2〉 아르헨티나와 페루의 과거사 관련 재단·기구

| 재단명 | 내용 | 형 태 | 업무영역 | 독립성 보장 방안 | 재원 마련 방안 |
|---|----|--------------------------------|--|--|--|
| 아르헨티나 '열린 기억' | | 민간주도형: 인권 관련 비정부기구 연합 | 사진, 구술과 문서자료 보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 연방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지 않는 비정 부기구 연합 | 부에노스 아이레스 시 기금+외국 정부 또는 재단의 후원 |
| 아르헨티나 '기 억의 공간' 협회 | | 민관협력형 공공재단 | '기억의 날' 캠페인 주관, 인권 교육 프 로그램 운영 | 다양한 구성원 의 이사회 참여 | 부에노스 아이레스 시 예 산+민간 기부금 |
| 아르헨티나 법무·안보· 인권부 국립기억 자료보관소 | | 정부기구 | 인권침해 사태에 대한 증 언과 기록 보존, 분석, 교육 | 정부기구 | 국가 예산+국제 협력기관과 외 국 정부나 기관 의 보조금 |
| 페루 가톨릭 사회행동 | | 가톨릭 재단 | 피해자 지원, 인권침해 사례 기록 보관, 기념물 설치 주도 | 민간주도형 | 가톨릭 기관 예산+국제 가톨 릭 단체의 지원 |
| 페루 집단기억과 인권정보센터 | | 국가인권 옴부즈맨 산하기관 | 피해자 관련 통계 조사, 기록 보존, 전시와 교육 프 로그램 지원 | 국가인권 옴부즈맨 위원 장의 의회 선출, 5년 임기 독립 성 보장 | 국가 예산 |

주요 권고안의 이행 여부를 감독해왔으며 여전히 강제 연행과 실종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특히 2004년 4월 기관 내에 '집단기억과 인권 정보센터'(Centro de Información para la Memoria Colectiva y los Derechos Humanos)를 설립해 5천 건 이상의 강제 연행, 고문, 실종, 초법(超法)적 처형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고 검찰로부터 이관 받은 각종 통계 업무의 성과를 일반인들에게 공개하고 홍보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V. 결 론

이제까지 진상조사위원회와 '인권 재판' 뿐만 아니라 배·보상법, 추모와

기록 보존을 통해 다양한 명예회복과 화해 정책을 모색한 아르헨티나의 사례와 진실·화해위원회 이후 주목할 만한 과거사정리 후속조치가 부재한 페루의 사례를 검토했다. 아르헨티나의 경우는 다른 어느 국가가 그 궤적을 뒤따르기 힘들 정도로 다양한 절차와 방식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모범 사례로 인식될 만하다. 이는 무엇보다 페루나 칠레와 달리 아르헨티나의 민주화 이행 과정이 군부와의 협약이나 협상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달리 말해 군부가 논의 과정에서 얼마간 배제된 채 ‘시민사회의 주도’ 또는 ‘파열을 통해’ 정치적 이행 과정을 겪었다는 점과 관련이 깊다고 볼 수 있다(Sikkink & Walling 2006, 307-308).

아르헨티나에서도 민주화 이행기에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정치 세력으로 남아있던 군부의 반발을 의식해 민선정부가 ‘인권 재판’을 서둘러 마무리하거나 사면법을 제정하는 방식으로 가해자들에 대한 집단 면책을 시도한 바 있다. 그러나 가해자와 피해자 어느 쪽도 만족시키지 못한 민선정부의 정치적 타협책은 21세기에 접어들어 새로운 집권 세력에 의해 파기되었고 ‘추악한 전쟁’의 책임자에 대한 사법 처리 과정이 뒤늦게나마 재연되고 있다.¹²⁾

아르헨티나의 사례는 공식적 책임 인정과 유감 표명뿐만 아니라 배·보상이 화해 정책의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일깨워준다. 칠레의 진실·화해위원회에서 활동한 법학자 호세 살라케트(José Zalaquett)에 따르면 “진실이란 본질적으로 배상과 동시에 예방”을 의미한다. 말하자면 탄압으로 야기된 심리

12) 예컨대, 2004년 3월 아르헨티나 연방대법원은 영·유아 탈취와 강제입양 혐의로 지방 경찰청장과 경찰청 소속 의사에게 각각 징역 7년형을 선고했는데, 이는 법원이 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었다. 2005년 4월에는 ‘좌익분자’를 제거하고, 강제수용소에서 태어난 영아의 출생증명서를 위조해 불법 입양을 도운 혐의로 호르헤 마냐코라는 의사에게 10년형이 선고되었다(BBC News, 23 April 2005. <http://news.bbc.co.uk/2/hi/americas/4475693.stm>). 이어서 2007년 대법원은 1990년 당시 카를로스 메넬 대통령이 내린 사면령에 대해 위헌 판결을 선고했고 이에 따라 옛 독재자 호르헤 비델라에게 가택연금 조치가 내려졌으며 2008년 10월에는 83세의 고령임에도 비델라가 감옥으로 이송되는 등 36명의 인권침해 가해자들이 기소되었다. 2010년 4월에는 군부 정권의 마지막 대통령이었던 레이날도 비뇨네에게 고문과 납치 등의 혐의로 25년 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적 충격의 치유와 미래에 그런 탄압이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일은 밀접하게 연관된 목표일 수밖에 없다(Grandin 2005, 47). 또 피해자들에 대한 공식적 배·보상은 국가의 도덕적·정치적 의무이고 생존자나 피해자 가족들의 법적 권리로 인식되어야 하지만 실제 배·보상은 대체로 상징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졌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이른바 ‘재판 없는 진실·화해위원회’의 사례를 보여준 페루의 경험에서 잘 드러나듯이 국가의 배상은 기소 정책과 사법적 정의 실현이나 제도 개혁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국가 행위의 불법성에 대한 인정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또 페루에서처럼 개별적인 피해 정도의 확인이나 진상규명 자체가 어려운 경우에는 일회적인 상징적 배상 또는 포괄적인 공동체적 배상 방식이 강구되기도 했다.

배·보상의 궁극적 취지는 단지 경제적 지원이 아니라 사회적 명예회복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런 취지가 왜곡된다면 아르헨티나의 피해자 단체처럼 금전적 배·보상 자체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개별적 배상이 현실적으로 어렵게 된 페루의 경우 진실·화해위원회는 경제적 배상의 목적이 피해 사실을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나아가 페루의 사례는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뿌리 깊은 인종적·지역적 차별을 시정하려는 조치, 그리고 정신 건강 프로그램의 마련 등이 화해 정책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화해 정책의 또 다른 축은 추모와 기념 문화의 확산이었다. 이런 사업의 책임 있는 주체 역시 국가라고 할 수 있다. 최근 화해 정책에서는 피해자들의 증언을 기록하고 관련된 기억을 새로운 역사로 승인하며 이를 통해 후속세대를 교육시키는 활동이 더욱 중요시된다(Cole 2007, 13, 16-17). 예컨대 아르헨티나의 피해자 단체들은 비밀구금수용소였던 해군기술학교 부지를 ‘국민 화합 공원’으로 변형시키려는 정부의 계획에 반대해 그것을 역사의 현장으로 그대로 보존하도록 요구함으로써 민주적 인권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게 했다. 또 페루에선 추모 사업과 역사교육이 개별적인 배·보상을 대신

하는 화해 조치로 추진되기도 했다.

아르헨티나와 페루의 과거사정리 후속조치는 우리에게 단 한 번의 ‘청산’이 아니라 끊임없는 성찰의 과제를 제시하면서 바람직한 과거사정리의 흐름을 다시 한 번 일깨워준다. 그것은 기억의 역사화에 대한 경시나 비극적인 과거사의 망각이 민주주의의 공고화에 해악을 끼칠 뿐이며 진지한 화해 정책은 평화와 인권 존중의 문화를 지향해야 한다는 교훈이다. 그런 맥락에서 추모, 기억의 역사화, 민주적 정체성의 함양, 그리고 국민적 화해를 주도할 수 있는 공적인 전문 기관의 활동은 필수불가결하다.

참고문헌

- 박구병(2006), 「‘추악한 전쟁’의 상흔: 실종자 문제와 아르헨티나 ‘오월광장 어머니회’의 투쟁」, 라틴아메리카 연구, Vol. 19, No. 2, pp. 69-96.
-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편)(2008), 『해의 진실화해위원회 보고서 자료집 II』,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편)(2010), 『해의 진실화해위원회 자료집 III: 화해 · 위령 · 재단 관련 번역 자료집(남미 · 남아공)』,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 캐서린 하이트(2008), 「기억의 정치, 인권의 언어」, 에릭 허쉬버그 · 프레드 로젠 외(편), 『신자유주의 이후의 라틴아메리카: 21세기에 대세를 전환하다』, 김종돈 · 강혜정 옮김, 모티브북, pp. 266-292.
- 프리실라 B. 헤이너(2008), 『국가폭력과 세계의 진실위원회』, 주혜경 옮김, 역사비평사.
- Agüero, Felipe (2007), “Dictatorship and Human Rights: The Politics of Memory,” *Radical History Review*, Vol. 97, pp. 123-133.
- Alberti, Gloria (2004), “Los Archivos del Dolor en América Latina. International Council on Archives,” *Comma*, No. 2, pp. 99-107.
- Barahona de Brito, Alexandra(2001), “Truth, Justice, Memory, and Democratization in the Southern Cone,” Paloma Aguilar *et al.*(eds.), *The*

- Politics of Memory: Transitional Justice in Democratizing Societies*, Oxford an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pp. 119-160.
- Burt, Jo-Marie (2007), *Political Violence and the Authoritarian State in Peru: Silencing Civil Society*,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Carrillo, Arturo J. (2006), "Justice in Context: The Relevance of Inter-American Human Rights Law and Practice to Repairing the Past." Pablo de Greiff(ed.), *The Handbook of Reparations*, Oxford an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pp. 504-538.
- Cole, Elizabeth A.(ed.) (2007), *Teaching the Violent Past: History Education and Reconciliation*, Lanham: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 Comisión de la Verdad y Reconciliación(2003), *Informe Final*, <http://www.cverdad.org.pe>
- Comisión de la Verdad y Reconciliación (2003), *Un pasado de violencia, un futuro de Paz: 20 años de violencia 1980-2000*, Lima: Comisión de la Verdad y Reconciliación, Defensoría del Pueblo.
- Cueva, Eduardo González (2006), "The Peruvian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and the Challenge of Impunity," Naomi Roht-Arriaza & Javier Mariezcurrena(eds.), *Transitional Justice in the Twenty-First Century: Beyond Truth versus Justi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70-93.
- Defensoría del Pueblo (2008), *El Estado frente a las víctimas de la violencia. ¿Hacia dónde vamos en políticas de reparación y justicia? Serie Informes Defensoriales-Informe*, No. 128, Lima: Defensoría del Pueblo.
- Grandin, Greg (2005), "The Instruction of Great Catastrophe: Truth Commissions, National History, and State Formation in Argentina, Chile, and Guatemala," *American Historical Review*, Vol. 110, No. 1, pp. 46-67.
- Guembe, María José (2006), "Economic Reparations for Grave Human Rights Violations: The Argentine Experience," Pablo de Greiff(ed.), *The Handbook of Reparations*, Oxford an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pp. 21-54.
- Guillerot, Julie y Lisa Magarrell (2006), *Reparaciones en la transición peruana: Memorias de un proceso inacabado*, Lima: APRODEH/ICTJ.

- Haworth, Nigel (1993), "Radicalization and the Left in Peru, 1976-1991," Barry Carr & Steve Ellner(eds.), *The Latin American Left: From the Fall of Allende to Perestroika*, Boulder and London: Westview Press, pp. 41-59.
- Instituto Espacio para la Memoria (2007), *Leyes principales instrumentos legales sobre derechos humanos y memoria*, Buenos Aires: Instituto Espacio para la Memoria.
- Jelin, Elizabeth (2003), *State Repression and the Labors of Memory*, translated by Judy Rein and Marcial Godoy-Anativia,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Kaiser, Susana (2005), *Postmemories of Terror: A New Generation Copes with the Legacy of the 'Dirty War'*,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Laplante, Lisa J. & Kimberly Theidon (2007), "Truth with Consequences: Justice and Reparations in Post-Truth Commission Peru," *Human Rights Quarterly*, Vol. 29, No. 1, pp. 228-250.
- Lerner Febres, Salomón (2009), "Achievements and Tasks in Confronting the Past in Peru and Latin America," 『세계 과거사청산의 흐름과 한국의 과거사정리 후속조치 방안 모색』,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국제심포지엄 자료집(2009.10.27.), pp. 248-267.
- Maymí-Sugrañes, Héctor J. (1999), "Latin American Archival Theory and Practice during the 1970s and 1980s," *Libraries & Culture*, Vol. 34. No. 3, pp. 222-240.
- Méndez, Juan E. & Javier Mariezcurrena (2003), "Unspeakable Truths," *Human Rights Quarterly*, Vol. 25, No. 1, pp. 237-256.
- Roht-Arriaza, Naomi (1995), "Conclusion: Combating Impunity," Naomi Roht-Arriaza(ed.), *Impunity and Human Rights in International Law and Practice*, Oxford an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pp. 281-304.
- Segovia, Alexander (2006), "Financing Reparations Programs: Reflections from International Experience," Pablo de Greiff(ed.), *The Handbook of Reparations*, Oxford an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pp. 650-675.
- Sikkink, Kathryn and Carrie Booth Walling (2006), "Argentina's Contribution to Global Trends in Transitional Justice," Naomi Roht-Arriaza and Javier Mariezcurrena(eds.), *Transitional Justice in the Twenty-First Century*:

- Beyond Truth versus Justi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301-324.
- Stern, Steve J. (1998), "Conclusion. Shining and Other Paths: The Origins, Dynamics, and Legacies of War, 1980-1995," Steve J. Stern(ed.), *Shining and Other Paths: War and Society in Peru, 1980-1995*,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470-476.
- Tandeciarz, Silvia R. (2007), "Citizens of Memory: Refiguring the Past in Postdictatorship Argentina," *Publications of the Modern Language Association of America*, Vol. 122, No. 1, pp. 151-169.
- Tappatá de Valdez, Patricia (2003), "El Parque de la Memoria en Buenos Aires," Elizabeth Jelin & Victoria Langland(eds.), *Monumentos, memoriales y marcas territoriales*, Buenos Aires: Siglo veintiuno de Argentina Editores, pp. 97-111.
- Tappatá de Valdez, Patricia (2004), "Archivos y Organizaciones de Defensa de los Derechos Humanos en Argentina," *Comma*, No. 2, pp. 109-114.
- Theidon, Kimberly (2004), *Entre prójimos: El conflicto armado interno y la política de la reconciliación en el Perú*, Lima: IEP.
- Theidon, Kimberly (2006), "Justice in Transition: The Micropolitics of Reconciliation in Postwar Peru,"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50, No. 3, pp. 433-457.

박 구 병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산 5번지 아주대학교 인문대학 사학전공
kbpark@ajou.ac.kr

논문투고일: 2010년 3월 31일

심사완료일: 2010년 4월 16일

게재확정일: 2010년 4월 28일

